

의안번호	2123540
의 퇴 인	이만희의원
회 답 일	2023. 09. 07.
추 계 번호	23D3357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1억 800만원(연평균 20억 2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(안 제17조제2항제4호)	10,108	-	-	-	-	10,108	2,022

- 주: 1.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(안 제17조제2항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개 지방소방본부가 각 1대씩 버스형태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2025년 한 해 동안 제작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
3. 이동식 안전체험관 1대의 제작비용은 2023년 기준 5억 600만원(소방청 자료)이며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제2항제4호(소방교육·훈련)	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¹⁾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규정	재량규정

- 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 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 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7조제2항제4호(소방교육·훈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9개 지방소방본부가 각 1대씩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2025년 한 해 동안 제작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

○ 소방청은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으로 버스형태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이 적합하다는 의견

－ 소방청 등은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각 지역의 소방서의 안전체험교실, 소방안전체험관, 버스형태의 이동식 안전체험관(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)을 활용하여 수행

○ 다만, 이동식 안전체험관으로 총 56대의 버스를 운영 중이나 부족하다는 소방청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라 19개 지방소방본부에 각 1대씩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⁾

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)
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3.4)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(안 제 17조제2항제4호)

-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를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지방소방본부가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대의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제작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
 - 2023년 6월 현재 소방청은 총 56대의 버스로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이나 부족하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라 19개 지방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제작하는 것으로 가정
 - 이동식 안전체험관 1대를 제작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5억 600만원(소방청 자료)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
- 추계결과,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01억 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등의 보호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: 2025~2029년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
이동식 안전체험관 제작 수량(A, 대)	19	-	-	-	-
1대당 제작비용(B, 백만원)	532	-	-	-	-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10,108	-	-	-	-

주: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5%	2.7%	2.4%	2.1%	2.0%	2.0%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오명희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